# 2026년 농협중앙회 등 정부합동특별감사 결과 공개문

2026. 10.

농림축산식품부
감 사 관 실

# Ⅰ 감사 개요

## ❑ 감사근거

○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 감독규정 및 시행령 제46조,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 ❑ 감사배경

○ 중앙회·재단 특별감사('25.11.24.~12.19.) 결과,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보다 철저한 감사를 위하여 정부합동감사 실시

- 국조실이 총괄하고 농식품부, 감사원,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 참여

## ❑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26. 1. 26. ~ 3. 6.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41명

## ❑ 감사대상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서울 서대문구 소재), 재단법인농협재단(서울 영등포구 소재)

○ 12개 회원조합(서울중앙농협, 한국양계축협, 진주남부농협, 안성농협, 군자농협, 원주농협, 강릉원예농협, 세종강남농협, 군산농협, 목포농협, 해운대농협, 인천원예농협)

## ❑ 중점 점검사항

○ (**운영 전반**) 인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채용 공정성, 계약 제도 및 집행 적절성, 상품권·홍보물품 구입·관리 현황, 성과급 제도 등

○ (**비위 의혹**) 물품 납품 등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 및 적정성, 의혹 관련 당사자간 계약 방법 및 현황, 물품 납품 및 배포내역 적정성, 외부기관의 조사내용 검토 등

# Ⅱ 감사결과

## 1 이사회 의결사항에 반한 조직 개편[경고 2]

□ 중앙회와 경제지주는 경제지주에서 추진하던 스마트팜 업무를 중앙회로 이관하기로 각각의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나,

○ 경제지주의 스마트팜 업무 중 총괄 및 예산 기능만 중앙회로 이관하고 경제지주에서 스마트팜 업무를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로컬팀을 존치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사회 의결사항과 다르게 조직개편을 실시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기관경고”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경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이사회 의결사항과 다르게 조직개편을 실시한 경제지주에 대하여 “기관경고”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경고)**

## 2 인사상담 체계 및 관리 부적정[경고 및 개선요구]

□ 중앙회는 인사상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인사상담역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무이사는 농협은행 직원에 대한 인사상담을 실시하여 인사총무부를 통해 농협은행에 전달하였고, 인사총무부는 인사상담 기록을 임의로 폐기하는 등 관리상 문제가 있었으며,

○ 전무이사, 대표이사를 인사상담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사실상 인사청탁의 통로가 될 소지가 있었음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사권한이 없는 농협은행 직원에 대한 인사상담을 실시하고 인사상담부를 폐기한 중앙회에 “기관경고”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경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인사상담역에서 전무이사,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인사총무부 직원 등으로 제한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개선)**

## 3 조합운영협의회 운영 및 관리 부적정 [경고 및 시정요구]

□ 조합운영협의회의 기금 사용 내역을 발췌 점검한 결과, 중앙회장 황금열쇠 선물, 조합장 등 퇴임 공로금 사적 부조 등에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기금을 협의회장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운영협의회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점검이나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중앙회에 “기관경고”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경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조합운영협의회 기금 사용 등 운영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기금 사용 기준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시정)**

## 4 직무대행 겸임 부적정 [개선요구]

□ 중앙회는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가 동시에 궐위된 경우 비상임이사 1인이 직무대행을 겸임하도록 하였으나,

○ 전무이사와 상호금융대표이사 직무를 구분한 농협법 및 소관 업무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도록 한 정관과 맞지 않음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가 동시 궐위된 경우 각각 직무대행을 지정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개선)**

## 5 광고비 집행 부적정 [경고 2 및 개선요구]

□ 중앙회가 지역본부에 광고비를 배정하고 있으나, 지역본부별 광고비 배정을 검토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고,

○ □본부는 특정 매체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집행하면서 광고 단가 등도 일관성없이 집행했으나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함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본부에 광고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검토자료 없이 배정을 추진한 중앙회에 대하여 “기관경고”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경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광고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광고 단가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과도하게 집행한 중앙회 □본부에서 대하여 “부서경고” 조치하시기 바람 **(부서경고)**

○ 지역본부에 대한 광고비 배정 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지역본부에서 광고비를 적정히 집행하도록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개선)**

## 6 신임 비상임이사 태블릿 PC 지급 부적정 [시정 · 개선요구]

□ 중앙회는 신임 비상임이사에게 태블릿 PC를 개인소유로 지급하고 있으나,

○ 태블릿 PC를 지급받은 신임이사 대부분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고 중앙회는 신임이사 퇴직 시 태블릿 PC를 회수하지 않고 있음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태블릿을 지급받은 비상임이사가 '비상임이사 지원에 관한 사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등록하시기 바람 **(시정)**

○ 신임 비상임이사에게 태블릿 PC를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지급 시 중앙회 고정자산으로 등록·관리하고 퇴직 시에는 반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선하시기 바람 **(개선)**

## 7 중앙회장 퇴임공로금 및 상임임원 퇴직금 개선 필요 [권고]

□ 중앙회는 비록 관련 규정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장 퇴임공로금 및 상임임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나, 회장의 퇴임공로금 지급기준 및 지급률을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선해야 했고, 농업·농촌 현실과 타 기관 사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회장 및 상임임원의 퇴임공로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 비상임임원인 회장에게 타 기관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퇴임공로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급기준(지급률 포함)도 전무이사가

정하고 회장이 의장인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절차상 상당히 자의적이며, 상임임원에 대한 퇴직금도 타 기관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게 지급하고 있음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비상임임원인 회장에 대한 퇴임공로금 지급률 등 지급기준을 규정에 명시하고, 회장의 퇴임공로금 및 상임임원의 퇴직급 지급기준을 농업·농촌 현실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눈높이에 맞게 조정하는 등 개선 권고 **(권고)**

## 8 비상임이사 등의 수당 및 부상 등 지급 부적정 [개선요구 2 및 통보]

□ 중앙회와 경제지주는 비상임이사 및 비상근임원 등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퇴임 부상 지급 시 농업·농촌 현실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물품(부상) 구매 시 계산근기를 명확히 하는 증빙서류를 받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 중앙회와 경제지주는 비상임이사 및 비상근임원 등에게 수당 등 지급 시 사회적 눈높이를 고려할 때 타 기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금액의 활동수당 및 심의수당 등을 주고 있고, 퇴직 시 공로금 50만 원을 받는 일반직원에 비해 비상임이사 등은 퇴임 시 금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음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비상임이사 등의 수당을 조정하는 등 지급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비상임이사등의 여비와 관련된 규정을 여비규정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개선)**

○ 경제지주 비상근임원의 기본수당 활동근거 마련 등 지급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비상근임원의 여비와 관련된 규정을 여비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개선)**

○ 비상임이사등 및 비상근임원의 퇴임 부상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물품(부상) 구매 시 증빙서류 구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통보)**

## 9 임원 및 집행간부 퇴임 시 부상 지급기준 등 개선 필요 [개선요구 및 통보]

□ 중앙회 및 경제지주는 상임임원 및 집행간부의 퇴임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한 부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물품 구매 시 계산근기를 명확히 하는 증빙서류를 받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 일반 직원 퇴직 시에는 공로금 50만 원만 주면서 임원 및 집행간부 퇴임 시에는 부상으로 전별금, 여행상품권, 순금 등 타 기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부상(금품)을 지급함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상임임원 및 집행간부 퇴임 시 사회적 눈높이 등에 맞게 부상 지급기준 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개선)**

○ 상임임원 및 집행간부 부상 지급을 위한 물품(부상) 구매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 구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통보)**

## 10 정기대의원회 기념품 지급 업무 추진 부적정 [통보 3]

□ 중앙회는 정기대의원회 기념품을 회의비로 편성하고 지출하려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기념품을 구매하여 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가액 5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중앙회가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고,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고가의 기념품 구매비용은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에 반영하여야 하나,

○ 최근 5년간 정기대의원회 개최 시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면서 구매 예산을 회의비로 지급하였고, 회의 참석자인 대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의비 성격과 맞지 않게 지급함

##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정기대의원회 기념품 구매 예산을 회의비로 편성하고자 할 때는 기념품 구매단가를 관련 법률 및 중앙회 예산과목 관리기준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이내로 하여 회의 참석자에게만 지급하거나, 총회 회원 조합장 전체에 지급하고자 할 때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등 정기대의원회 기념품 구매 예산 계정을 적정하게 분류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통보)**

○ 정기대의원회 기념품 구매비용 및 지급 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 또는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세무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통보)**

○ 기념품 구매 예산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고가의 기념품에 대한 지급내역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11 직상금 사용 부적정 [통보]

□ 중앙회는 업적우수 등으로 농협업무추진과 농업재해 극복 등에 공이 있다고 직상금 지급자가 인정하는 임직원 등에 대해 직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 이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급여기록카드에 등록하지 않았고, 사무소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적사용이 의심되게 사용하거나 지출목적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게 사용하였음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급한 직상금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통보)**

## 12 직상금 지급 절차 부적정 [개선요구]

□ 중앙회 직상금은 업적우수 등으로 농협 업무추진과 농업재해 극복 및 조직발전에 공이 있다고 직상금 지급자가 인정하는 관계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 지급하고 있으나,

○ 지급 인정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지급액에 대해서도 직상금 지급자가 직접 정하는 등 지급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지급될 우려가 있으며,

○ 특별한 기준 없이 일부 부서에 편중되게 지급되고 있거나 직상금 지급자와 관련이 있는 회원조합 및 선거 투표권이 많은 회원조합에 편중되게 지급되고 있었고,

○ 포상비 산출근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직상금을 회계상 포상비

항목으로 지급하며, 일부 회계연도에는 실행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직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음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직상금 지급대상의 공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직상금 지급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상 및 금액을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직상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개선)**

## 13 농협 퇴직자단체 출자회사의 농협 건물 무단 사용[징계 · 경고 · 주의 · 시정요구 2 및 통보 2]

□ 「고정자산관리규정」 등에 따라 소관 자산의 보호와 효율적이고 적법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총괄자 및 보관·관리 주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자산 임대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하나,

○ ㈜○○은 동인회와 자회사 등에게 농협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무단 전차인인 자회사 등에게 적극적으로 퇴거 요청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단 사용하도록 방치함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고정자산 관리에 관한 총괄자 및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징계)**

○ 고정자산 관리에 관한 총괄자, 관리자 및 사무취급자로서 직무의무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경고)**

○ ㈜○○의 의견과 같이 계열사인 ㈜○○의 고정자산에 대하여 과거 중앙회가 규정에 맞지 않게 처분하고도 지금까지 관리하지 않은 △부에 대하여 ”부서주의“ 조치하시기 바람 **(부서주의)**

○ ㈜○○의 책임과 동인회 및 자회사등의 책임소재를 따져 관련 법을 위반한 무단 전대차와 규정에 없는 무상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의 손실액에 대하여 “회수” 또는 “변상” 처분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시정)**

○ ㈜○○의 고정자산인 건물 11층을 「고정자산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시정)**

○ 다른 계열사 등에 대하여 유사한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 계열사 등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소관 고정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통보)**

○ 동인회와 그 자회사 등이 중앙회 및 농협은행 보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 실시 후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통보)**

## 14 민간단체 등의 농협중앙회 건물 무상사용 부적정[통보]

□ 「고정자산관리규정」 등에 따라 소관 자산의 보호와 효율적이고 적법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총괄자 및 보관·관리 주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자산 임대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하나,

○ 중앙회는 소관 고정자산인 중앙회 건물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5개 민간단체가 중앙회 건물 본관 1층 및 로비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차

계약 등을 하지 않고 계속 무상사용 하도록 방치함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민간단체 등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본관 건물 무상 사용 실태 및 고정자산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 실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 (**통보**)

## 15 신협을 통한 비정상적 물품 구매 관행 및 관리 부실[개선요구 2 및 통보]

□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상호금융대표는 예산 집행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중앙회는 각 사업부문 대표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나,

○ 중앙회는 사무용품, 소모품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중앙회 소재 신협 매장에서 거래하며 물품 선수령 후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구매했고, 집행 세부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 건당 50만원 초과의 고가 기념품을 구매하였음에도 물품검사 및 검수조서 작성을 이행하지 않고 취득한 물품을 물품관리 대장에 등재하지 않거나 물품 배부 시 배부처 명단 등 상세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음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물품 구매 시 지급회의서 작성을 철저히 하고 지출 증빙 시 단순 총액 영수증이 아닌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며, 실제 물품의 반입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 절차를 체계화하시기 바람 (**개선**)

○ 기념품 등 홍보물품 배부 시 최종 수령인 명단 및 확인서, 배송 증빙 등을 지급회의서에 첨부·보관하고 모든 취득 물품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 사적 유용 방지하시기 바람 **(개선)**

○ 향후 고의적 증빙 조작이나 비정상 거래를 지속·방조하는 부서장 및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시기 바람 **(통보)**

## 16 농협 계열사와의 수의계약 관리 부적정 [개선요구 및 통보 2]

□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예정 가격을 정한 후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상대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에게서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계약 완료 시 이를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 중앙회는 계열사인 ㈜□□와 실시한 수의계약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지 않았고,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계열사와 수의계약이 그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검사 및 검사조서 작성과 관련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검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개선)**

○ 최근 4년간 계열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을 점검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수령 하지 않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담당자, 부서 등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통보)**

○ 계열사와의 수의계약 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17 업무용 사택 특혜 제공 등 운영 부적정 [시정 · 개선요구]

□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의 사택입주 가능요건 및 임차보증금 한도·사택면적·사택 이용 비용 자부담 등을 준수하여 사택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나,

○ 중앙회는 예외 인정에 대한 기준 없이 입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에 사택을 지원하거나, 임차보증금 한도 및 면적 상한을 초과하여 사택을 계약하였으며, 자부담에 해당하는 사택 청소 용역비를 지원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택을 관리·운영하고 있었음

###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현재 사택을 이용하고 있는 운영기준 위반자를 대상으로 위반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당하게 지원한 청소용역비를 환수하시기 바람 (**시정**)

○ 입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의 입주, 임차보증금 한도 및 사택 면적 초과 허용 등 무분별한 예외 승인 재발을 방지하고 상한선이 없는 임차보증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사택 운영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람 (**개선**)

## 18 상호금융부문 예산편성의 독립성 침해 [경고 · 개선요구]

□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상호금융대표는 예산 집행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중앙회는 각 사업부문 대표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나,

○ 중앙회는 중앙회는 상호금융부문의 절감예산을 교육지원부문 대표인 전무이사가 일괄 설정하여 상호금융부문 대표의 경영

목표 설정,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함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독립사업부제 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부문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운영한 ○실에 대하여 “부서경고” 조치하시기 바람 (**부서경고**)

○ 다른 사업부문대표의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개선**)

## 19 예산편성과 다른 과도한 예산 변경 부적정 [개선요구]

□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수지예산의 변경에 대해서도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반영하고 수지예산을 변경할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변경 하여야 하나,

○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중앙회는 수지예산의 변경에 대해서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았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 뿐만 아니라 변경도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수지예산서의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함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총회 의결이 필요한 예산 변경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람 (**개선**)

## 20 과도한 유보예산 편성 개선 필요 [통보]

□ 중앙회는 대의원회의 수지예산 승인 후 각 사업부문별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수지예산서 등을 준수하여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행예산보다 많은 유보예산을 교육지원부문 뿐만아니라 상호금융부문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유보예산을 편성함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승인한 수지예산서 등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21 업무용 골프회원권 관리 미흡 [개선]

□ 중앙회는 업무용 골프회원권 2장을 고정자산으로 취득하여 직원들이 업무관련자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골프회원권 이용에 대한 사전 보고·승인 절차, 이용 목적 및 적정성 검토, 이용기준 등 관리체계 없이 운용하고 있음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업무용 골프회원권 이용현황을 관리하는 등 회원권이 취득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개선**)

## 22 해외연수(출장) 결과보고 미흡 [통보]

□ 중앙회 직원은 해외연수(출장)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취지와 목적에 맞는 충실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등 관리하여야 하나,

○ 최근 3개년 해외연수(출장) 결과보고서에서 전체 일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작성하거나, 작성해야 할 필수 내용(사진, 성과 등)이 누락되어 있는 등 결과보고서를 미흡하게 작성했음에도 별도 보완없이 정상 제출 처리됨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해외연수(출장) 결과보고서를 철저히 작성하도록 하고 외유성 해외연수(출장)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23 조합장 사망 시 상조금 지원 부적정 [개선요구]

□ 중앙회는 회원조합 조합장이 재직 중 사망시 회원조합에서 업무추진비로 상조금(20만원 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조금 납부는 업무추진비 집행목적과 맞지 않고

○ 중앙회는 회원조합 조합장에게만 장례지원금(20백만원 한도) 및 유가족 위로금(1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개선 필요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회원조합 조합장이 재직중 사망시 타지역 회원조합 조합장이 업무추진비로 상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개선)**

## 24 회원조합 차량구입 지원사업 관리 · 운영 부적정 [개선요구 2]

□ 중앙회는 종합업적평가 최우수 지역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농업인 실익용 차량 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 구입·취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운반구 비목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 회원조합은 차량운반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차량 구입 예산을 표창비 비목으로 집행하고 있었으며, 일부 회원조합에서는 중앙회 승인없이 해당 차량을 임의처분 하였음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종합업적평가 최우수 회원조합 포상 시 중앙회 예산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람 **(개선)**

○ 취득한 차량의 취득·처분·관리·임대차 등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회원조합별 수요를 고려하여 시상하는 등 예산 낭비가 없게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람 **(개선)**

## 25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권고]

□ 중앙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콘도이용, 장애인 자녀 양육비 지원,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자보전 및 학자금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 재정 한계 등의 이유로 계약직은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자보전 및 학자금 지원 혜택 배제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집행 시 비정규직

등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도록 이해관계자간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람 (**권고**)

## 26 물류센터 투자 채권 회수 철저 [통보 2]

□ 중앙회 상호금융은 업체에 대한 대출심사 및 TF한도증액 등의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나,

○ '□□물류센터 건설 사업 PFV'에 대해 1,100억원의 PF대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변 물류센터 공실현황 등 채권 회수에 불확실한 요인이 컸음에도 대출을 실행함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차주에 대한 채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채권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통보**)

○ 차주가 건설하는 물류센터가 평택물류센터 리뉴얼 기간동안 수도권 물량을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건설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통보**)

## 27 MRO SHop 공급처 심사 미흡 및 부적정 수의계약 관행 만연 [개선요구 2]

□ 경제지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MRO Shop 신규 입점 신청업체에 대해 심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른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 추진해야 하나,

○ 입점심사를 진행하면서 신설법인에 대해 관련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심사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등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고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 관련 규정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계약임에도 MRO Shop에 등록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가 MRO Shop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개선)**

○ 신규 입점 신청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자 입점 평가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자의 임의적인 평가를 방지하시기 바람 **(개선)**

## 28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 후보 검증 부적정 [개선요구 2]

□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관련 부서 합의, 준법감시인 사전 심의 및 자격검증 결과 등을 부의하여 선임하고 있으나,

○ 관련부서 합의, 준법감시인 사전 심의 및 자격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사례 확인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을 회장 외의 자 또는 기구에서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개선)**

○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임이사 후보 검증 시 중앙회의 검증 절차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하시기 바람 **(개선)**

## 29 농협 계열사의 비상임이사 선임 부적정 [개선요구 및 통보]

□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에 따라 비상임이사는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나,

○ 범농협 계열사는 비상임이사 대부분이 전·현직 조합장 등 관계기관 출신이고 외부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규정상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에 상한이 없음

###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각 계열사의 정관 개정 등을 통해 회사별 규모 및 특정 등을 고려하여 이사 수에 적정한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개선**)

○ 각 계열사 이사회 구성에 업계 전문가 등이 일정 비율 이상 선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통보**)

## 30 농협경제지주회사 상근임원 및 집행간부 특별성과보수 지급 부적정 [통보 2]

□ 농협경제지주는 상근임원 및 집행간부에게 특별성과보수 지급을 결정할 때는 회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우수한 실적이 있을 경우 지급하여야 하나,

○ 2024년 약 83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상근임원 및 집행간부에게 특별성과보수를 지급함

### 조치 방향

○ 농협경제지주가 상근임원 및 집행간부에 대하여 경영협약

평가결과 외에 특별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그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 평가기준 또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특별성과금을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통보)**

○ 농협경제지주에서 상근임원 특별성과금 지급 관련 사전협의 요청 시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성 확인 외에도 요청 기관의 경영협약 평가결과 외 특별한 지급사유 등 특별성과금 지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통보)**

## 31 주주총회 · 이사회 기념품 지급 업무 부적정 [통보 2]

□ ㈜□□는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참여한 조합장 등에게 회의 참석 수당 및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참석한 대표이사, 조합장 등 기념품 수령자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 기념품 구입 비용을 접대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판매관리비 및 경비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었음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손)자회사의 조합장, 이사, 임직원이 수령한 기념품 등 금품에 대해 지급 경위, 목적, 금액에 따라 소득세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통보)**

○ 수당 외 불요불급하거나 과도한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회의기념품 지급 경위, 목적, 금액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인세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통보)**

## 32 퇴직기념금품 과다 지급 및 소득신고 누락 [개선요구]

□ 농협재단 및 ㈜☆☆는 퇴직하는 대표이사, 비상근임원 등에게 공로금, 퇴직기념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 타 협동조합 및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공로금 및 퇴직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음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의 임원 및 비상근이사, 농협재단은 임원 및 비상근이사 등의 퇴직공로금 및 기념품 지급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개선**)

## 33 해외연수 지원 경비 소득세 과세 부적정 [개선요구 및 통보 2]

□ ㈜□□는 회원조합 조합장 및 이사에 대한 선진지 농업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합장에 대한 연수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고 있으나,

○ 지급부서에서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었고 수령자는 이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음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해외연수에 동행하는 내부 임직원에 대한 경비는 연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개선**)

○ ㈜□□가 지원한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성격 및 금액규모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통보**)

○ ㈜□□가 조합장·이사 등에게 제공하는 접대성 해외연수 금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34 농협 계열사의 골프회원권 관리 부적정 [개선요구 2]

□ 농협 계열사는 총 4건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대 및 직원복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 골프회원권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회원권 이용에 대해 이용자, 이용목적 등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지 않거나 최근 2개월치만 관리하고 폐기처리 하고 있었음

○ 또한 직원복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일반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아 특정인이 독점하여 특혜를 누리거나,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여지가 있었음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손)자회사가 골프회원권의 이용자, 이용목적, 동반자 등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개선**)

○ 복리후생 목적으로 보유하는 회원권의 경우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에 이용방법 등을 공지하는 등 일반 직원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시기 바람 (**개선**)

## 35 ㈜□□ 일상감사 및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요구 및 통보]

□ 계약업무를 할 때 내규 등에 따라 시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받고,

계약 관련 서류를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할 때 사전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나,

○ ㈜□□는 용역계약 추진 시 계약 체결 이후 일상감사를 받고, 계약대상자로부터 계약보증보험 증권을 늦게 받았으며, 하도급 시 사전 서면 승인 요청 없이 하도급 계약을 함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계약업무 추진 시 일상감사 기한 및 계약부속서류의 제출기한을 미준수하거나 누락하고, 계약을 하도급할 때는 발주사에 사전에 승인 요청을 하지 않은 ㈜□□ ☆부에 대해 "부서주의" 처분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부서주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물품과 용역계약의 유형에 따른 하도급 서면 승인 필요성을 검토하여 계약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약상대자와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추진 시 하도급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통보)**

## 36 ㈜◎◎ 외주업무 용역계약 추진 부적정 [경고요구 및 통보]

□ ㈜◎◎은 용역계약을 추진할 때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 규정 중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근거로 하나로마트 일부 지점의 미화·주차안내 등에 대한 외주업무 용역계약을 '16년부터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 ’25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업체들의 과도한 응찰로 계약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담당자의 구두 보고만으로 취소하고 추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받아 기존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함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일반경쟁입찰이 불리하다는 데에 대한 구체적 사유 없이 외주업무 계약에 대해 10여년간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추진한 ㈜◎◎에 “기관주의” 처분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경고)**

○ 계열사들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남용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전파하는 등 조치하시기 바람 **(통보)**

## 37 ㈜◇◇ 호남농산물물류센터 하역 도급계약 부적정 [징계 · 시정 · 경고요구]

□ ㈜◇◇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의계약을 진행하며, 계약서에 따라 수급인이 수급한 업무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서면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나,

○ △△물류센터 하역 도급계약에 대해 기존 계약업체와 계약 해지 후 하역업무 실적이 없고 인력과 장비 등을 보유하지 않은 신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해당 신생 업체가 서면승인 절차 없이 기존 계약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어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이를 모르고 있었으며 입찰제안서에 기존 고용승계 조건을 포함하였음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음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 관련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징계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징계)**

○ 관련자 등의 책임소재를 따져 부적절한 계약으로 발생한 ㈜◇◇의 손실액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 또는 “변상”을 요구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시정)**

○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한 ㈜◇◇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경고)**

## 38 ㈜◇◇ 택배 간선업무 도급계약 부적정 [주의 · 개선 요구]

□ ㈜◇◇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경쟁입찰 하여야 하나,

○ ㈜●●과의 간선운송 사업에 대해 2개 업체와 협력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 협력사가 긴급한 상황에서 예비기사 및 대체차량을 확보하도록 하였음에도 명절 등 물량 급증으로 예비 운송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1개 업체와 예비 운송사 운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 수의계약 절차 또한 계약일 이후에 내부 방침을 받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함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수의계약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한 ㈜◇◇ 관련자에 “주의” 처분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주의**)

○ ㈜◇◇가 특정 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을 남용하지 않고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물류계약사무처리준칙」에 대한 보완을 검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개선**)

## 39 농축협 공정 채용 의무 미준수 [주의요구]

□ 「채용준칙」에 따라 채용절차 운영에 있어 지원자의 역량 중심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채용절차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는 비밀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나,

○ □□농협 상임이사는 농축협 동시채용 면접 전날 면접관으로 선정된 조합 직원에게 타 조합장에게서 받은 면접시험 대상자의 사진을 ‘축협’이라는 단어와 함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함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면접시험 대상자의 사진을 전달하여 공정한 채용절차를 위반하는 등 채용과정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시기 바람 (**주의**)

## 40 조합원 제명 조치 및 임원 임무 수행 부적절 [통보]

□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여야 하나,

○ □□농협은 조합원 지위 거부 처분 사유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항을 근거로 특정 조합원의 조합 가입 승인 후 제명 조치함

○ 이후, 제명 조치에 대해 다시 시작된 재판 1심에서 제명결의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조합원 제명 취소 및 제명을 의결함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재판)의 결과에 따라 □□농협에서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는지 여부와 조합원 제명 결정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부적정한 가입 거절과 위법한 조합원 제명 결정 및 이로 인해 조합에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관련자에게 징계·변상 등 합당한 처분 조치하시기 바람 (**통보**)

## 41 공사 관리 부적정 [통보]

□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지점 신축 공사 등을 추진할 경우 폐기물 및 토사 등은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나,

○ □□농협은 공사 중 발생한 토사를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 따른 적절한 처리 방법에 대한 검토 없이 임의로 개인 소유 토지 복토에 사용함

□ 「임직원 윤리강령」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며, 업무용 재산을 사적 사용·수익하거나 사적 노무를 제공 받아서는 안되나,

○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현장에 직원 및 소유 장비가 동원됨에 따라 재산 사적유용 및 사적노무 강요 등의 의혹이 발생함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협의 해당 건축공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시고, 위법한 사항이 있을 시 관련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분 조치하시기 바람 **(통보)**

## 42 경매직 채용 기준 마련 미흡 [개선요구]

□ 「채용준칙」에 따라 경매직(일반직)을 채용할 시 채용준칙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농협은 경매직(일반직) 채용 시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발생함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경매직 채용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준들에 대하여 내부 지침이나 규정 등을 마련하시기 바람 **(개선)**

## 43 업무추진비 집행 · 관리 미흡 [통보]

□ 「농협경리실무」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적정한 지출증명서류를 첨부하는 등 지급회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나,

○ □□농협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건별 지급회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 건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지출 증명서류 영수증에도 사용자가 서명하지 않는 등 일부 업무추진비 집행·관리를 미흡하게 함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 방안을 마련하시고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 (**통보**)

## 44 조합인사위원회 징계 · 변상 심의 부적정 [시정요구]

□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조합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 등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심의·의결에 참여해서는 안 되나,

○ △△농협은 조합장이 징계 심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 심의를 주관하고 의결에 참여함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조합장 징계 건에 대하여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징계관련자인 조합장을 제척하고,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을 임시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재심의·의결을 하시기 바람 (**시정**)

## 45 채용절차 준수 미흡 [경고 및 통보]

□ 「채용준칙」에 따라 채용절차를 운영함에 있어 역량 중심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채용이 되도록 하고, 친인척 관계 등으로 불공정한 채용 의혹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 △△농협은 2022년 복무규정 위반의 사유로 징계를 받기 전 퇴사한 사고관련자(임직원의 친인척)를 2023년 계약직으로 재임용함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친인척임에도 물의를 일으키고 퇴사한 직원을 재임용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농협에 "기관경고"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경고**)

○ △△농협조합장은 채용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람 (**통보**)

## 46 고정자산 취득 의결 시 구비서류 미비 [통보]

□ 「고정자산관리규정」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시 규정 제11조에 명시된 사항을 기재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 △△농협은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원의 표시 및 자기자본 보완계획서를 누락한 상태로 이사회 심의 및 대의원 총회 의결을 받고 자산을 취득함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고정자산 취득시 「고정자산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관련 자료 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 (**통보**)

## 47 단체협약 위반 [주의]

□ 「근로기준법」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 △△농협은 정기상여금을 단체협약에서 명시된 연간 월 통상임금의 400%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24년 350%만 지급 후 미지급된 정기상여금 50%를 2025년 1월에 지급함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기상여금 지급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농협에 “기관주의”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주의**)

## 48 규정을 위반한 업무 배치 부적정 [시정요구 2]

□ 「직제규정」에 따라 본점에 간부직원인 상무를 두고, 간부직 직원의 경우 지사무소에 둘 경우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야 하나,

○ △△농협은 간부직 직원(상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점에 간부직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간부직 직원인 상무를 지점으로 인사조치하여 일반 직원이 담당하는 실무 업무를 분장함

□ 「자점감사업무방법」에 따라 본점의 감사통할책임자는 상무로 지정하여야 하나,

○ △△농협은 2024년 10월 이후 상무가 아닌 팀장을 감사통할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직제규정」에서 명시한 분장업무와 직무의 책임 등에 근거하여 직제를 운영하고 업무분장을 재조정하시기 바람 (**시정**)

○ △△농협조합장은 「자전감사업무방법」에서 명시한 방법에 따라 조합의 감사통할책임자를 재지정하시기 바람 (**시정**)

## 49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미흡 [통보]

□ 「농협경리실무」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적정한 지출증명서류를 첨부하는 등 지급회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나,

○ △△농협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지출 증명서류 영수증에도 사용자가 서명하지 않는 등 일부 업무추진비 집행·관리를 미흡하게 함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 방안을 마련하시고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 (**통보**)

## 50 기념품 제작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통보 2]

□ 「계약규정」 및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라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계약 변경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물품 인수 시 검사조서 또는 검수증을 작성하여야 하나,

○ ○○농협은 기념품을 5천만 원 이상 구입하면서 명확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을 불투명하게 진행함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기념품 제작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시고, 위법한 사항이 있을 시 관련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분 조치하시기 바람 (**통보**)

○ ○○농협조합장은 계약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 (**통보**)

## 51 대출심사위원회 재심의 절차 미흡 [통보]

□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집단잔금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기존에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취급기준 변경 시 사업장, 대출지원마감일, 한도, 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취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 ○○농협은 대출금리를 재심의·의결하면서 취급기준 변경이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 및 근거자료에 대한 보완없이 최초 상정된 안건의 분석자료와 동일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의결함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집단잔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기존에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취급기준 변경 시 사업장, 대출지원 마감일, 한도,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취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집단잔금대출 취급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람 (**통보**)

## 52 토지 매입 절차 부적정 [주의 및 통보]

□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취득 시에는 지역본부장의 승인, 이사회 심의 및 총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 ○○농협은 토지 매입에 따른 투자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지역본부장의 심사를 사전에 하여야 함에도 사후에 실시하였고, 이사회, 총회 의결 이전 토지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 사업계획 변경 이후 자산 취득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가 없었고, 사업계획 심의를 위한 이사회 안건 부의 시 자산취득 승인을 위해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을 대부분 누락하고 긴급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일상감사를 사후 의뢰함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규모 투자 및 토지매입과정에서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농협에 “기관주의”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주의**)

○ ○○농협은 토지매입 등 자산취득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람 (**통보**)

## 53 주유소 매입 관련 절차 부적정 [주의 및 통보]

□ 「정관」 및 「고정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자산 취득 시는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서류를 빠짐없이 이사회에 부의하고 심의·의결 받아야 하나,

○ 주유소 매입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선집행 하였음

○ 자산 취득을 위한 이사회 안건 부의 시 자산 취득 승인을 위해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을 대부분 누락함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업무용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농협에 “기관주의”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주의**)

○ ○○농협조합장은 자산취득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람 (**통보**)

## 54 업무용 차량 관리 부적정 [시정 · 주의요구 및 통보]

□ 「고정자산관리규정」 및 「임직원윤리강령」에 따라 모든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운행 및 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적 이용 방지, 재산적 손실 및 법규 위반 예방 등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나,

○ ○○농협은 업무용 차량 운행에 대하여 운행일지, 유류비 사용, 정비·수리 등을 적정하게 작성·관리하지 않았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2021년 이후 업무용 차량의 과속·주정차 위반 과태료 중 운행자의 책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비용으로 집행한 내역을 운행자에게 회수하시기 바람 (**시정**)

○ 업무용 차량 운행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일지, 유류비 사용, 정비·수리 등 기록을 작성·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작성·관리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시기 바람 (**주의**)

○ 업무용 차량의 사용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의 사적 이용 방지, 재산적 손실 및 법규 위반 예방,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람 (**통보**)

## 55 업무추진비 집행 · 관리 미흡 [통보]

□ 「농협경리실무」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뒤 적정한 지출증명서류를 첨부하는 등 지급회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사적 사용 의심 거래의 경우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급회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나,

○ ○○농협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법정증명서류에도 일부 사용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며,

○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및 사적 사용 의심거래 지출 시 지출 비용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고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람 (**통보**)

## 56 경조사비 집행 절차 부적정 [경고 및 통보]

□ 「농협경리실무」 및 「임직원 윤리강령」 등에 따라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적정한 지출증명서류를 첨부하는 등 지급회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나,

○ ☆☆축협은 경조사비 집행을 위한 지급회의서 작성 시 지급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 경조사비 지급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그 부고장 및 청첩장을 지출회의서에 첨부하여 여러 건의 경조사비를 마련한 뒤 모두 특정인에게 집행함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있어 「농협경리실무」 및 「임직원 윤리강령(안)」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축협에 "기관경고"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경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경조사비 조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회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안과 경조사비의 적정 집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 및 조합에 수사의뢰, 징계 등 적합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통보**)

## 57 조합원 탈퇴 신청 관리 부실 [주의 및 주의요구]

□ 「정관」 및 "조합원·준조합원 관리업무방법"에 따라 조합탈퇴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탈퇴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탈퇴 여부를 판단하고 구비서류를 편철 후 영구 보관하여야 하나,

○ ☆☆축협은 조합원 탈퇴 관련 일부 필수 서류를 누락하거나 관련 서류를 분실함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 탈퇴서류 관리에 소홀한 ☆☆축협에 "기관주의"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주의**)

○ ☆☆축협조합장은 조합원 가입탈퇴 담당자로서 조합원 탈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관리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람 (**주의**)

## 58 직원 복무 관리 미흡[통보]

□ 「복무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직원이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근무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나,

○ ☆☆축협은 특정 직원이 지속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가 매우 미흡하였음

**조치 방향**

○ ☆☆축협조합장은 직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자체 감사 및 처분 조치 강화, 유연근무제 등 도입 등을 반영한 복무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통보**)

## 59 표창 추천 부적정[주의 및 통보]

□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축산분야 연말 장관표창 계획'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표창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여야 하나,

○ ☆☆축협은 장관 표창 추천자가 공적 분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적내용을 확대하여 작성하였고, 일부 공적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는 등 표창 추천을 부적정하게 운영함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관 표창 추천 공적조서를 개인의 공적이 아닌 내용으로 부적절하게 작성한 ☆☆축협에 "기관 주의"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주의**)

○ ☆☆축협조합장은 장관 표창 등 대상자 추천 시 유공별로 적정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이 수여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통보**)

## 60 공사 관리 부적정 [통보 2]

□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라 공사 관리에 있어 규정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고 절차 등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계약 등을 추진하여야 하나,

○ ☆☆축협은 자체 사업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농협 공사의 특수성,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부 절차를 위반함

**조치 방향**

○ ☆☆축협조합장은 공사 계약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 (**통보**)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축협에서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계약 절차 및 진행과정 상에 부적정한 사항이 없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 및 조합에 적합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통보**)

## 61 대의원 대상 선심성 선진지 견학 개최 부적정 [권고 및 통보]

□ 「교육·지원사업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하나,

○ ◇◇농협은 대의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면서 목적과 다른 견학 일정 추진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음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회원 조합에서 대의원회 등 개최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관에 규정된 사무소의 소재지 내에서 개최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람 (**권고**)

○ ◇◇농협조합장은 농업 선진지 견학 추진 시 목적에 부합한 계획 일정 수립 및 예산을 집행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62 인사 운영 절차 부적정 [주의 및 개선요구]

□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 따르면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하되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하여야 하나,

○ ◇◇농협은 상임이사의 제청 없이 조합장이 직원을 직접 임면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 실시한 직원 임면 13건은 상임이사의 결재 없이 인사를 실시하였음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관에서 정한 인사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추진한 ◇◇농협에 “기관주의”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주의**)

○ ◇◇농협조합장은 상임이사 소관 직원에 대해 임면 시 규정과 절차에 맞게 운영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개선**)

## 63 4급 간부직원 임면 부적정 [개선요구 및 권고]

□ 「인사규정」에 따라 4급 직원을 간부직원으로 임면한 경우 임용요건에 적합한 직원을 인사업무협의회에 추천해야하나,

○ ◇◇농협은 4급 과장으로 임용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을 부산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에 추천하였고 원안대로 임명하였음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지역 인사업무협의회의 승진 및 간부 직원 임면 추천 절차 등 지역 인사업무협의회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람 (**권고**)

○ ◇◇농협조합장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맞게 승진자 선정 및 간부 직원을 임면하시고,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개선**)

## 64 성과급 운영 절차 부적정 [개선요구 및 통보]

□ 「직원급여규정」에 따르면 특별성과급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일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하나,

○ ◇◇농협은 이사회에서 조합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조합장 단독적인 결정으로 지급하였음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변동성과급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에 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 ◇◇농협은 변동성과급 지급 관련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없이 전액 미지급하였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특별성과급 지급 관련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맞게 운영하시고,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개선**)

○ ◇◇농협조합장은 변동성과급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경우 조합 임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람 (**통보**)

## 65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 미흡 [통보]

□ 「농협경리실무」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게 지출하여야 하고 지급회의서의 적요란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나,

○ ▽▽농협은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로 정육선물세트를 외상구매하면서 월별 단일건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아 '일반접대비'로 회계처리하는 등 지급회의서 관리가 미흡하였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업무추진비 등 조합예산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위하여 직원 교육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통보**)

## 66 정례적 대의원회 개최 부적정 [주의]

□ 「대의원회운영규약」에 따르면 조합의 중요 의결사항에 대해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한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 ▽▽농협은 중요 의결 사항이 없음에도 대의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 실비, 식대 등을 지급하였음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 내 중요 의결 사항 없이 정례적으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한 ▽▽농협에 “기관주의”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주의**)

## 67 업무용차량 관리 부적정 [징계요구 및 통보]

□ 「고정자산관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업무용차량 등 조합의 소유재산을 업무수행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 운용 시에는 운행 및 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나,

○ ▽▽농협은 업무용차량 운행일지를 보존기간 경과 등의 정당한 근기 없이 임의 파기하고 이후 운행 일지를 작성·보관하지 않아 운행 사실관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함

○ 또한, 임원용 차량에 대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보유 차량에 대해 수리일지를 작성하지 않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정당한 근거 없이 차량 운행일지를 임의로 파기하여 감사 방해 및 증거 인멸한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시기 바람 (**징계**)

○ ▽▽농협조합장은 업무용 차량을 사적 사용한 의혹에 대하여 관련자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 (**통보**)

## 68 임원 선진농업연수 추진 부적정 [통보]

□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

○ ◎◎농협은 임원 선진농업연수 계획 시 수지예산과 다르게 예산을 임의 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조합장 및 임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추진하였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 범위 내에서 목적에 부합한 계획 수립 및 예산을 집행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 (**통보**)

## 69 사적 이해관계 임원의 이사회 의결 참여 부적정 [경고]

□ 「임직원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합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 및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 ◎◎농협은 장현지점 신축 관련 직무관련자인 임원에 대해 신고 및 직무배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 임직원이 사적 이해관계 등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농협에 “기관경고”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경고**)

## 70 여신 우대금리 적용 적정성 검토 미흡 [개선요구]

□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금리인하 신청 접수 시 채무자의 신용상태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적용하여야 하나,

○ ◎◎농협은 대출 기한 연기 시 특판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고객 민원 해소를 위해 임의 적용하였음

○ 또한, 금리인하요구 시 채무자의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 객관적인 확인 없이 고객 민원을 사유로 금리인하를 적용하였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출 기한 연기 시 특판 금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리인하 결정 시 내부 마진율 검토 등 금리인하 적정 여부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개선**)

## 71 법인카드 사적 사용자에 대한 징계기준 부적정 [개선요구]

□ 「징계변상규정」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임직원에 대해 일관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징계량을 결정하여야 하나,

○ ◎◎농협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법인카드로 사적 사용한 임직원 10명 중 3명에 대해서만 징계성 처분 및 환수조치를 하였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당사자의 인사상 불이익과 신분상 영향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징계의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개선**)

## 72 형사사건에 대한 조합인사위원회 절차 준수 미흡 [통보]

□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 따르면 외부 감독·감사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결과 발견된 사고 관련 조합 임직원에 대해 조합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징계하여야 하나,

○ ◎◎농협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더라도 징계 대상 해당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조합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징계 대상 해당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조합인사위원회 부의 등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통보**)

## 73 조합원 가입 업무 처리 미흡 [통보]

□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면 구비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 등을 철저히 하고 조합원 자격 심사 후 가입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 ■■농협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신청한 자매에 대해 실제 경작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조합원

가입에 승인하였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조합원 가입 신청자의 농업경영 및 종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74 조합원 실태조사 시 현지조사 실시 미흡 [통보]

□ 「정관」 및 「조합원·준조합원관리업무방법」에 따라 조합원 실태조사 시 농업인 입증서류 외 실제 영농 종사 여부 등 현지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하나,

○ ■■농협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이외의 서류를 농업인 입증서류로 제출한 조합원에 대해서만 현지조사를 실시함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조합원 실태조사 시 현지조사 실시 대상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통보**)

## 75 심야시간대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통보 2]

□ 「법인카드 사용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으로 의심될 수 있는 심야시간대에 법인카드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사적 사용 의심거래에 해당할 경우 집행의 정당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급회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나,

○ ■■농협은 최근 3년 간 업무추진비를 심야시간대에 사용하면서 정당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급회의서에 첨부하지 않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심야시간대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임직원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기준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통보**)

○ ■■농협조합장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76 항공권 마일리지 관리 소홀 [권고 및 통보]

□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업무 추진 등으로 적립된 항공권 마일리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추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 ■■농협은 업무 목적으로 적립된 임직원의 항공권 마일리지에 대하여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임직원 2명이 사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하였음

**조치 방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업무용으로 적립된 항공권 마일리지 관리를 위하여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권고**)

○ ■■농협조합장은 업무 목적으로 적립된 항공권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한 임직원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77 업무추진비 집행 · 관리 미흡 [통보]

□ 「농협경리실무」에 따라 업무추진비 지출 시 지급회의서는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회계사건별로 한 장씩 작성하여야 하나,

○ ▲▲농협은 서로 다른 사건의 증빙서류 다수를 한 장의 지급회의서에 첨부하여 작성함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업무추진비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람 (**통보**)

## 78 제규정 관리 미흡 [개선요구]

□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르면 제규정이라 함은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문화된 내부규범으로서 규약·규정·준칙·업무방법을 말하며, 중앙회의 규정례를 참고하여 조합실정에 맞게 필요한 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나,

○ ▲▲농협은 중앙회에서 시달된 규정례 모범안·예를 자체 제규정으로 간주하고 일부규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규정(자체규정 및 준칙)을 제정하지 않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달한 규정의 모범안·예를 바탕으로 조합의 실정에 맞게 내부 규범을 마련하도록 요구 (**개선**)

## 79 직원 기념품 구매 · 지급업무 부적정 [경고 및 통보]

□ 「농협경리실무」에 따르면 회의비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회의비 지출액에 대해서만 집행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원에게 포상금(현물)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 ▲▲농협은 3건('23~'25년)의 기념품을 회의비로 구매하였고, 기념품을 임·직원에게 배부하였으나 국세청에 근로소득 신고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르면 물품의 구매계약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의 완납 후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 ▲▲농협은 물품의 구매금액이 62백만 원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3건의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당한 수의계약 사유·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회의비 집행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회의비로 기념품을 구매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한 ▲▲농협에 "기관경고"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경고**)

○ ▲▲농협조합장은 회의비 집행·관리 및 근로소득 신고·원천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80 직원 채용 서류관리 미흡 [통보]

□ 「채용준칙」에 따르면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80일 기간의 범위 내에서 채용권자가 정한 기간까지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제출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하나,

○ ▲▲농협은 최근 3년간 실시한 신규직원 채용 건 중 채용권자가 정한 보관 기간이 지났음에도 115명의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파기하지 않았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보관 기간이 경과한 채용 서류에 대해 지체없이 파기하고, 채용서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81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준수 미흡 [개선요구]

□ 「복무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 파기된 단체협약 중 근무시간을 유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별도 방침없이 복무규정과 상이하게 9~17시의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24년 이후 입사한 직원 8명은 단체협약 효력 대상이 아님에도 복무규정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있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갱신하거나, 별도 방침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조치하도록 요구 (**개선**)

## 82 직원 채용 서류관리 미흡 [통보]

□ 「채용준칙」에 따르면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80일 기간의 범위 내에서 채용권자가 정한 기간까지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제출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하나,

○ ▲▲농협은 최근 3년간 실시한 신규직원 채용 건 중 채용권자가 정한 보관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6건에 대해 파기하지 않았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보관 기간이 경과한 채용서류에 대해 지체없이 파기하고, 채용서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83 사고처리 후속조치 미이행 [시정]

□ 「회원조합자체사고처리기준」에 따라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사고조서를 작성하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뒤 징계량을 부의하여 징계사유에 따라 대기발령, 순환배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 '25년 12월 조합감사위원회에 사고보고 후 자체사고처리 절차에 따라 사고조서 작성 및 필요시 징계위원회 소집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조합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조서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처리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람 (**시정**)

## 84 대출 신용등급 심의 절차 부적정 [주의요구]

□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여신 취급 시 차주의 신용등급이 6C일 경우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근거를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검토의견서에 명확히 기술한 후 대출 실행 이전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나,

○ ▲▲농협은 상향 사유 입증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주의 신용등급을 상향(6C→6B)한 뒤 사후적으로 자료를 보완함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른 신용평가모형상 신용등급 조정 심의 과정에서 상향 사유 입증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관련자를 “주의” 조치하시기 바람 (**주의**)

## 85 외국환 거래 정정업무 취급 소홀 [통보]

□ 「외국환업무방법」에 따라 외국환매매 거래 실행 이후에는 고객 요청에 의한 취소·정정은 시장질서 및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절대 불가하고 직원의 실수로 인한 정정 후 정당거래 시에는 당초 거래 회차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 ▲▲농협은 당초 거래 회차의 거래를 적용하지 않고 정당

거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등 외국환 정정업무 19건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함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외국환업무방법」에 따라 외국환 거래 정정업무 취급 시 환율회차 적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통보**)

## 86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추진 부적정 [개선요구 및 통보]

□ 「채용준칙」에 따라 채용 시 지원자의 자격, 면허증, 최종학력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받아 퇴직 후 3년까지 보관해야 하고, 「채용준칙(예)에 따른 외부위원 운용기준」에 따라 외부위원 수당 지급액에 대한 자체 방침을 세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 ●●농협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의 입사지원서에 명시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서류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관하지 않았으며,

○ 외부위원 수당에 대한 별도 지급 방침을 마련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지급해오던 금액에 맞춰 지급함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외부위원 선임 시 수당 지급을 위한 자체적인 방침을 마련하시고, (**개선**)

○ 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구비 서류를 구비·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통보**)

## 87 조합원 가입 출자금 안내 부적정 [통보]

□ 「정관」에 따라 신규 조합원 가입 출자좌수 기준은 20좌(10만 원) 이상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 ●●농협은 가입 신청자에게 정관에서 정한 20좌보다 많은 금액(통상 700좌, 350만 원)을 출자하도록 권유하여 조합원 가입을 제한함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 시 「정관」에서 명시한 가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 출자좌수를 안내하는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조합원 가입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통보**)

## 88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조치 부적정 [주의 및 통보]

□ 「조합원·준조합원관리업무방법」 및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조합원 실태조사 시 농업인 해당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나,

○ ●●농협은 10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농업인 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서류를 일부 누락하여 제출받음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일부 조합원이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농협에 "기관주의"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주의**)

○ ●●농협조합장은 자격 입증 서류를 미비하게 확인한 조합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재실시하고,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조합원 실태조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 (**통보**)

## 89 업무용차량 이용 · 관리 부적정 [경고 및 통보]

□ 「고정자산관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조합의 소유재산인 공용차량은 업무수행에 한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차량 운용 시에는 운행 및 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나,

○ ●●농협은 업무용차량 4대에 대해 차량운행·수리일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일부 임원은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함

**조치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량 운용 시 운행 및 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농협에 "기관경고" 조치하시기 바람 (**기관경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협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하여 관련자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징계 및 회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 (**통보**)

## 90 부동산 매입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요구]

□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라 7억 원 이상의 토지 구입 시 감정평가법인의 1년 이내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감정평가액과 매입가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수의계약 시 적용 사유를 입증할 관계서류를 비치했어야 하나,

○ ●●농협은 62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탁상자문을 받았을 뿐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구체적 사유에 대한 확인 없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함

○ 토지 구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수의계약 적용 사유를 입증할 관계서류를 비치하지 않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감정평가 등 예정가격 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관련자들을 "주의" 조치하시기 바람 (**주의**)

## 91 부동산 매각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요구 및 통보]

□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르면 경쟁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민법」에 따라 조합이 환매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환매특약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하여야 하나,

○ ●●농협은 주차장 부지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계약조건을 추가·변경하였고, 환매특약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하지 않아 조합의 법적 권한을 주장하기 어렵게 함

□ 「임직원 윤리강령」에 따라 임직원은 ●●농협과의 이해충돌을 회피하여야 하나,

○ ●●농협은 매수자인 ●●농협 이사를 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하지 않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부동산 매도 계약과정에서 「계약업무처리 준칙」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거나 누락한 관련자들을 "주의" 조치하시고, **(주의)**

○ 현재 누락된 환매특약을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등 법적으로 조합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임직원 윤리 강령」에 따라 조합과 임직원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92 국외출장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시정요구 및 통보]

□ 「여비규정」에 따라 여행업체 또는 위탁연수처 등에 경비를 일괄 지급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국외여비 중 일당체제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출장 후 여비를 정산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 ●●농협은 해외출장자에 대해 일당체제비 명목의 여비 8,958,040원을 과오지급하였고, 해외출장 후 증빙서류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여비규정」에 따라 과오지급된 일당체제비 8,958,040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시정)**

○ 국외출장 결과 처리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93 업무추진비 집행 · 관리 부적정 [경고 · 주의 · 시정요구]

□ 「농협경리실무」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사용제한업종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시간대나 장소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으로 의심될 수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지급회의서는 회계 사건별로 한 장씩 작성하여 사용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 ★★농협은 업무추진비를 사용제한업종(노래방)에 사용하였으며, 휴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사용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지급회의서를 작성 시 사용내역 여러 건을 묶어 사용내용의 구체적 기재 없이 한 건으로 작성함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제한업종에 사용한 관련자들을 “경고” 조치하시고, (**경고**)

○ 「농협경리실무」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및 지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 담당자들을 “주의” 조치하시고, (**주의**)

○ 사용제한업종에 사용된 업무추진비 520,000원을 회수하고,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람 (**시정**)

## 94 국외출장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시정요구 및 통보]

□ 「여비규정」에 따라 여행업체 또는 위탁연수처 등에 경비를 일괄 지급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국외여비 중 일당체제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출장 후 여비를 정산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 ★★농협은 해외출장자에 대해 일당체제비 명목의 여비 1,200,000원을 과오지급하였고, 해외출장 후 증빙서류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미흡하게 첨부함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여비규정」에 따라 과오지급된 일당체제비 1,200,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시정)**

○ 국외출장 결과 처리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95 직원 기념품 구매 · 지급업무 추진 부적정 [통보 3]

□ 「농협경리실무」에 따르면 회의비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회의비 지출액에 대해서만 집행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원에게 포상금(현물)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 ★★농협은 대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기념품을 회의비로 구매하였고, 기념품 구매계약에 대해 근로소득 신고 및 원천징수를 실시하지 않음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명절사은품 등 기념품 구매 시 구매 예산을 회의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기념품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등 예산 계정을 적정하게 분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통보)**

○ 기념품 구매비용 및 지급 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

또는 업무추진비 세무조정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세무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통보**)

○ 기념품 구매 예산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고가의 기념품에 대한 지급 내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 96 임원 여비규정 운용 미흡 [개선요구]

□ 농식품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여비규정의 정액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야 하고,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회 및 인근 농·축협의 지급사례를 참고하여 임원에게 일비·숙박비·식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으나,

○ ★★농협은 임원의 식비·숙박비 지급 없이 일비를 정액 300천 원 지급하는 방식으로 여비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에게 과도한 출장여비를 지급함

**조치 방향**

○ ★★농협조합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개선요구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임원 여비를 숙박비, 식비, 교통비를 구분하여 실비로 지급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임원의 국내 여비 지급액을 재조정하시기 바람 (**개선**)